

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. 12. 화순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2. 12.

다. 상정일자 : 2002. 12. 20

(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주민자치과장 임영택

나. 개정사유

-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고,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다수의 이장자녀에게 장학금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① 장학생의 자격기준 (제2조)

- 이장의 재직기간 완화

→ “3년이상 근속한 자”에서 “2년이상 근속한 자”로 완화

- 초·중·고등학교 종합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거 종합식차 제도 폐지
(교육부 훈령 제527호)

→ “학과성적이 재학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자 또는 기능, 체육,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” 조항 삭제

② 장학금 지급의 정지 (제8조)

-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, 투명하지 못한 조항 등 삭제

-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
-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불량한 때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장현범)

- 지역의 이장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으로 이장나이의 고령화, 하는 일보다는 혜택이 적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. 화순군이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대

안으로 생각됩니다.

- 현행 제2조에 규정된 장학생의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대상이 적어, 대상의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이장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, 개정안 제2조에서 이 장의 근속년수를 3년에서 2년으로 하향하고, 학업, 품행, 기능 등이 뛰어남을 삭제함으로써 어느 정도 그 대상을 확대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.
그러나 만약 신청자가 많아질 경우,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심사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아울러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.
- 현행 제8조제1항제1,4호의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적 표현 및 타 호와의 중복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개정안과 같이 삭제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.
- 아울러 예산이 허락된다면 대학생까지의 장학금 지급도 차세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.
- 본 개정안의 법규상,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 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 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첨 부 :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장학생의 자격) 장학생은 이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한다.

제8조 제1항중 제1호와 제4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조(장학생의 자격) 장학생은 이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학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2.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, 체육,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	<p>제2조(장학생의 자격) 장학생은 이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자의 자녀로 한다.</p>
<p>제8조(지급의 정지) ①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때 2. ~ 3. (생략) 4.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. (생략) ② (생략) 	<p>제8조(지급의 정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삭 제> 2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삭 제> 5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